

Hong Kong (SAR) Tax Alert

December 2022 | Issue 26



홍콩의 역외소득비과세제도 업데이트

개요



2022년 10월 28일 개정된 역외소득 비과세 제도 (FSIE)의 입법초안과 IRD의 행정지침이 발행된 이후, FSIE제도와 관련된 여러가지의 주요 변동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세무속보에서는 이러한 변동과 관련 최근 정보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관보게제를 통해 공표된 특정 역외소득에 대한 조세 개정세법안에 더해, 입법회는 법안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과 그에 제출된 의견²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추후, 홍콩정부는 제출내용들에 대해 답변하였으며³ 추가로 FSIE제도의 참여면제제도에서 기본세율 (headline rate) 접근법을 채택하도록 EU와 합의에 이르렀음을 시사하였습니다⁴.

본 세무속보에서는 정부의 답변에 담긴 보다 중요한 논점과 설명, 그리고 기본세율 접근법의 새로운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관보로 공표되었던 법안에 대한 내용과 주요 법안에 대한 주요 논점은 중전에 발행된 [Hong Kong Tax Alert – Issue 21, October 2022](#) 와 [Hong Kong Tax Alert – Issue 24, November 2022](#)를 참고해 주십시오.

정부의 답변에 담긴 주요 설명 / 업데이트

1. 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칭하며 파트너십(legal person이 아닌), 단위형투자신탁 (unit trust) 혹은 여타 법인이 아닌 실체로부터의 이익배분, 지점으로부터의 이익송금은 포함하지 않음.

2.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는 통상 금전의 사용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액수를 의미하며, 금전사용을 하지 못함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음. 그러나, 금융리스의 수익이 FSIE제도 상 이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음.

3. 지분처분이익

홍콩정부는 법안적용대상이 되는 역외지분처분소득의 처분이익의 양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12월 31일 현재 매각된 지분의 가치를 공정가치로 재평가할 가능성에 대해 EU와 논의할 것임.

1 The Bill can be accessed via this link: <https://www.gld.gov.hk/legazette/pdf/20222643/es32022264319.pdf>

2 KPMG is one of the parties that has made a submission on the Bill. Please refer to this link for all the submissions received: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 Bills Committee \(legco.gov.hk\)](#)

3 The government's responses can be accessed via this link: [bc06cb1-819-2-e.pdf \(legco.gov.hk\)](https://www.legco.gov.hk/yr2022/english/bc/bc06/papers/bc06cb1-833-1-e.pdf)

4 Please refer to the letter in this link for details: <https://www.legco.gov.hk/yr2022/english/bc/bc06/papers/bc06cb1-833-1-e.pdf>

4. 순수지주회사 (pure equity holding entity- PEHE)의 정의

- 지분투자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차입으로부터 부수되는 소득(외환차익 등)이 발생해도 여전히 순수지주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그러나, 피투자회사에 무이자대출을 하고, 역외원천 배당이 원천인 여유 자금을 그룹의 자금운용회사에 대여해 주거나 잉여자금을 사용해 그룹의 cash pooling에 참여하고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해 순수지주회사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됨.

5. 순수지주회에 대해 완화된 경제적실질 요건

- 순수지주회사가 경제적실질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IRD는 납세의무자의 전체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상업적 실질을 고려할 것임.
- IRD는 "지분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holding and managing equity participations)"활동에 대해 행정지침 혹은 실무해설 (DIPN)을 통해 그 의미를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할 것임.

6. 서비스 외주계약

- 납세의무자는 외주계약에 대해 내부의 주요계약서 혹은 적절한 문서화를 통해 특정 경제적활동과 감시활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임.
- 외주계약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정상가격의 범주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이전가격 규정의 적용 가능성에 따름.

7. 참여면제제도상 15% 세율적용 조건

- 홍콩정부는 EU와 기본세율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 특정 역외원천소득이 배당인 경우, IRD는 (1)홍콩 역외지역에서의 배당과 그 원천이 되는 이익 모두에 부과되는 유사한 조세, 그리고 (2) 홍콩역외의 지역에서 관련된 후속되는 (downstream) 소득에 대한 유사한 조세의 합산액을 고려하여 15%조세 조건이 충족되는지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지를 모색해 볼 것임.

8. 외국납부세액 공제

- 배당지급의 원천 이익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적정 지분보유비율 임계치 (10%)는 현재 유사한 제도를 허용해 주고 있는 중국본토와 베트남과의 조세조약에 규정된 것과 일치함.
- 소득별 ("income-by-income") 기준 (현재의 세액공제제도에서 채택한 방식)이 FSIE제도상 세액공제액을 결정하는 데에도 채택될 것임.

IRD는 상기 이슈에 대해 행정지침이나 DIPN을 통해 설명할 것임.

참여면제제도상 기본세율 접근방식 ("headline rate" approach)

2022년 11월 23일자 법안위원회에 보내진 공문4을 통해, 홍콩정부는 참여면제제도 상 15%세율 조건에 따른 특정역외원천소득, 원천소득 혹은 관련후속소득이 15%이상의 세율에 적용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기본세율접근방식이 채택될 것임을 시사하였음:

- 적용세율은, 일반적으로 특정역외원천소득과 원천소득 혹은 관련후속소득에 부과된 기본세율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의미함. 기본세율은 해당 소득에 부과된 실제 세율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관련 소득이 특수한 세법 (특혜세율제도 등)에 의해 해당 지역의 통상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이것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세혜택이 아니라면,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해당 특수한 세법 등에서 규정된 최고세율이 되어야 함.

Hong Kong (SAR) Tax Alert

IRD는 상기의 세율에 대한 해석 내용을 행정지침에 반영할 것임.

그러나, (1)비거주자에 의해 파생된 지분처분이익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중국의 경우 10%), (2) 역외지역에서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3) 조세조약에 따라 지분처분소득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해 기본세율 접근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KPMG의 논평

홍콩정부가 법안에 대해 우리의 제안내용이 포함된 서면제출에 대해 제안과 피드백을 채택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FSIE제도 상의 다양한 충족요건들이 실무적으로 보다 더 집행될 수 있도록, IRD가 실제의 상황을 감안하여 더 많은 지침과 사례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납세의무자들이 FSIE제도 하에서 조세처리의 명확화, 확실성과 일관성을 기대하고 있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홍콩의 FSIE제도에 대한 실무적 적용과 해설을 둘러싼 이슈들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비즈니스계는 이와 관련된 향후의 발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장 최근의 IRD의 행정지침 (때때로 업데이트 예정)과 향후 법의 실행시에 발행될 DIPN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kpmg.com/cn/socialmedia



For more KPMG Hong Kong (SAR) Tax Alerts, please scan the QR code or visit our website:
<https://home.kpmg/cn/en/home/services/tax/hong-kong-tax-services/hong-kong-tax-insights.html>



For a list of KPMG China offices, please scan the QR code or visit our website:
<https://home.kpmg/cn/en/home/about/offices.htm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Huazhen LLP, a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nership, KPMG Advisory (China) Limited, a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Chinese Mainland, KPMG, a Macau (SAR) partnership, and KPMG, a Hong Kong (SAR) partnership, are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s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2022 KPMG Tax Services Limited, a Hong Kong (SAR)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s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sation.